2024학년도

유치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배곧초록유치원

목차 | 유치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Ⅰ. 유치원안전계획 개요 ―― 1
1. 유치원 현황 ····· 1
2. 유치원 안전 조직 ····· 3
3.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7

Ⅱ. 유치원안전 현황 ―― 9
1. 전년도 유치원 안전 계획 추진실적 ····· 9
2. 유치원 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 11

Ⅲ.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 41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 41
2. 유아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 71
3. 안전한 교육 활동 여건 조성 ····· 32
4.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 92

Ⅳ. 안전 대응 및 행동 수칙 ―― 13
1. 아동학대 예방 ····· 13
2. 미세먼지 ····· 23
3. 감염병대응 ····· 63
4. 성교육 계획 및 초기 대응 방안 ····· 04

Ⅴ. 안전사고 피해회복 ―― 24
1.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 24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 34
3.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 44

참고 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64
참고 2. 안전사고 조치 및 대응방법 ····· 94

PART I

유치원안전 계획 개요

1 유치원 현황

일반 현황

유치원명	배곧초록유치원	설립 구분	공립 단설
주 소	(15012)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8-11		
전 화	031-364-6100 (교무실)	홈페이지	http://bggreen.kg.kr
원 장	윤영연	유치원안전책임관	김윤옥

학생 및 교직원 현황

유아 학급수 유아수	1학년(3세)	2학년(4세)	3학년(5세)	특수학급	합계
	5	4	4	3	16
	70	80	96	(12)	246

교직원 (명)	교원	교무,행정직원	급식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25	4	4	2	5	40

유치원 위치도

<긴급차량접근경로>

<출입지점 개요>
- 정문: 주 출입구 차량, 도보 출입구 구분됨

<주요 교실 위치>
- 교무실: 2층
- 행정실: 1층
- 보건실: 2층
- 원장실: 3층

비상대피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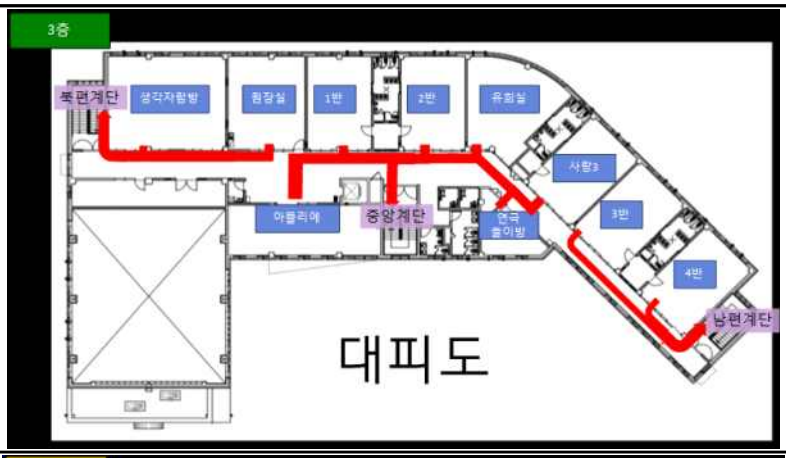
3층
북편계단
생각자람방
원장실
1반
2반
유희실
사랑3
아틀리에
중앙계단
연극 놀이방
3반
4반
남편계단
대피도

2층
북편계단
교무실
1반
2반
사랑2
다목적 1
자료제작실
중앙계단
교사 휴게실
3반
4반
강당
남편계단
대피도

1층
부출입구
행정실
1반
2반
사랑1
3반
4반
5반
식당
교직실
중앙현관
대피도

실외 놀이터
대피장소
열매반 (만5세)
꽃잎반 (만4세)
새싹반 (만3세)
차량진입
후문
교문
주차장입구

2 유치원 안전 조직

비상대책반 구성

* 원장 부재시 원감, 원감 부재시 교무부장 직무 대행

총괄

원 장

- 대책반 지휘, 통제
- 조정, 보고 및 신고

실무지휘

원 감

- 상황실 운영
- 정책진단, 정책판단, 대외협조

상황기록자

실무사, 행정계장

(기록/보고) ⇄

유관기관 협조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관할지구대, 의료기관

(정보연계) ⇄

	현장대응팀	원내지원팀	행정지원팀	외부지원팀
	팀장: 안전부장 보건담당교사 사회복무요원	팀장: 교무부장 학급담임 방과후교사 교무실무사	팀장: 행정실장 주무관 사회복무요원 영양사 및 기타직원	교육지원청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재난안전	–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 보호자 연락 – 최초 사안조사 및 정보수집 – 일지 및 사안보고서 작성	– 비상연락(전직원,학부모) – 직원회의 개최 – 유아현황 파악 – 심리상담 – 학사일정 검토, 관련 문서 작성	– 유아 귀교 대책 수립 –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 – 피해현황 파악 – 유치원운영위원회 협조 체계 구축	– 자문, 지원
감염병	–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 환자파악 및 처치, 진료의뢰 –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 역학조사의뢰 – 등교중지유아관리 – 유아, 학부모교육	– 상황판 작성 – 수업결손대책 수립 – 등교중지 유아의 출결사항 확인 및 가정학습관리	– 방역활동, 위생시설 관리 – 예산 및 행정지원 – 대내외 홍보 – 대책반 업무지원	– 자문, 지원

유치원식중독 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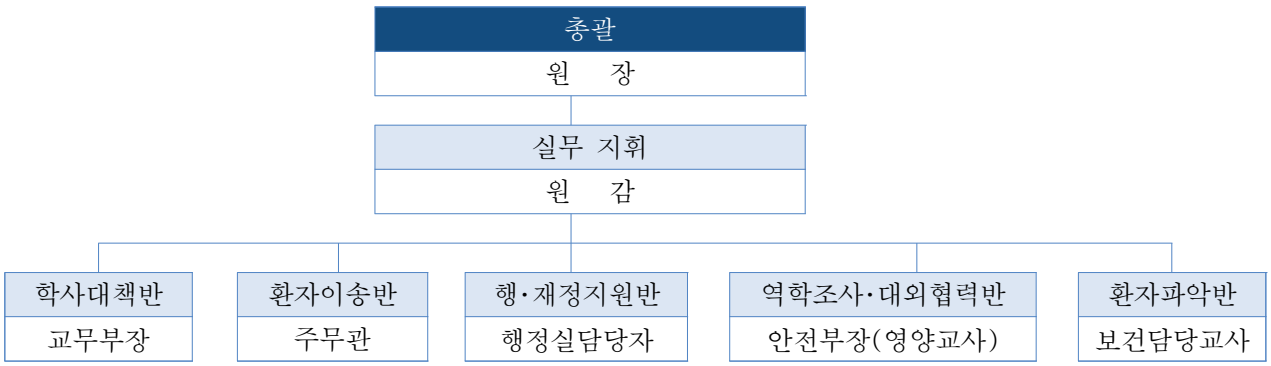

응급구조체계 조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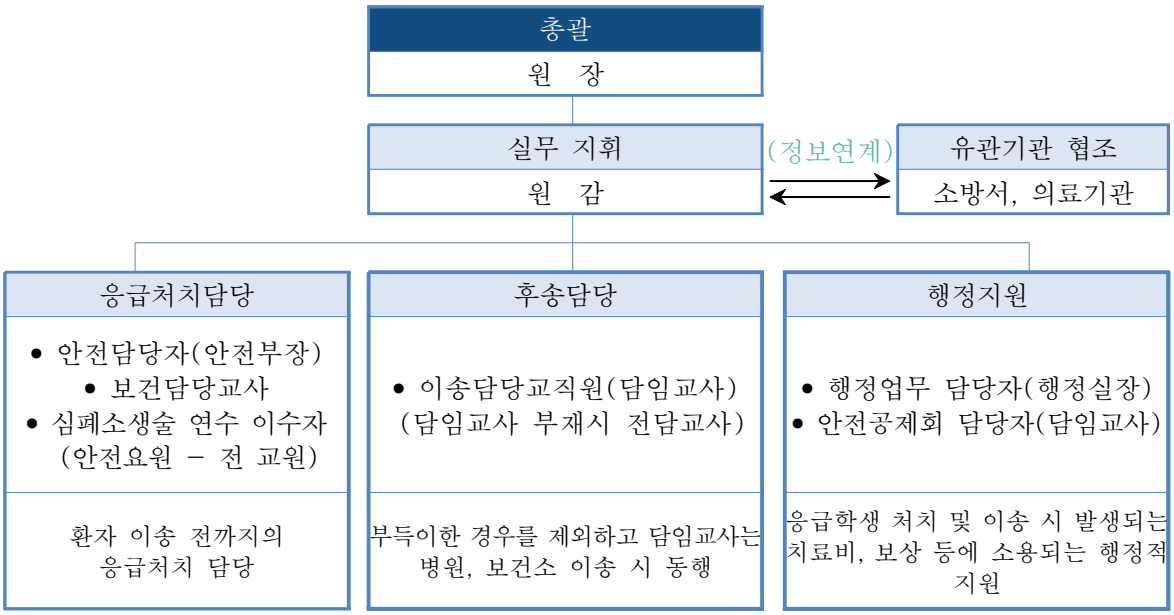

○ 담당자별 세부업무

구분		위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증상일 경우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비고
상황		의식장애, 호흡곤란, 약한맥박, 심정지, 대출혈,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순외상, 단순골절, 고열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업무 분담	최초발견자	• 접근 가능한 교사에게 보고하도록 조치 • 안전담당자 및 응급구조팀이 올 때까지 현장관리		
	원장	• 응급사고 관리 전반에 대해 총괄 •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원감	• 상황파악 및 지시 • 이송 후 보고 받은 최종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 • 유치원 내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배정		
	안전담당자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병원 이송 시 동행(담임)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학생 처치 결과 학부모 상담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교무기획부장
	담임교사	• 학부모 연락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환자 병원 이송 시 동행 • 치료 후 학부모에게 보상 안내	• 학부모 연락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 안내 및 조치(의료기관 선택은 학부모 의사에 따름) • 학부모에게 인계 • 필요시 병원 이송 동행 •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송자 지정 • 담임교사가 수업중이거나 부재 시 이송담당 및 원감이 이송토록 고려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치료 후 학부모에게 보상 안내	
	교무기획 및 안전부장	• 질서 및 생활지도 • 수업 결손 방지 지원		교무기획 및 안전부장
	이송담당	• 연락 받은 즉시 응급이송차량 준비 •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 • 응급처치자는 차량운전하지 않도록 함		이송:주무관(원감) 응급처치자: 담임교사
	행정담당	• 추후 보상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 • 병원 이송교사 등의 출장처리와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및 공제 급여 청구		행정실장 안전담당자 담임교사
	기타	• 응급사고 기록지 작성: 추후 작성 • 병원 이송을 위해 보호자가 자녀를 데리러 유치원에 오지 못할 경우 교직원이 보호자와 협의 후 직접 이송할 수 있음 • 병원 이송교사는 사전 출장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두 보고 후 사후에 출장 결재		

유관기관 협조체계

-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훈련, 사고구조, 사고복구 등 일련의 학교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사전에 구축

유관기관	주소	전화번호
시흥교육지원청	마유로446번길 11-2	031-488-2465
시흥경찰서	황고개로 513	031-310-9153
시흥보건소	시청로 20 (장현동)	031-310-5830
시흥소방서	정왕신길로 206	031-310-0502
시흥119안전센터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031-310-0501
119구조대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031-310-0451
경찰민원	시흥시 황고개로 513	콜센터 182
시흥시화병원	경기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	031-432-2600

3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안전사고 보고체계 (유치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 (동시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

사고 발생	→	상황 파악	→	상황 보고 (동시보고)
현장		유치원		유치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 (보고방법) 현장사고 상황파악 후 교육부 안전 대표메일*을 통하여 사고 보고(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보고)

  * moe119@korea.kr 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메일로 자동 전송

- (보고기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유치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유치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유치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관 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안전사고 관리지침

교육부
안전사고
관리지침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
교내 응급처치 가능 환자
병원치료 필요 환자
응급환자
상황파악 전파
담당교사에게 상황전달
담당교사에게 상황전달
최초 발견자 즉시 119 신고
응급 조치
교내 응급처치 시행
교내 응급처치 / 병원이동 및 이송
응급처치 시행 / 병원이동 및 이송
상황 정리
주의사항 안내 (학생)
치료경과 파악
치료경과 파악
보고 조치
학교장 보고 (필요 시)
공제회 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교육청(교육부) 유선 보고
교내 또는 교육청 보고
공제회 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3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경우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청(교육부) 보고 ★★ 사망 또는 장해 예상, 3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경우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청(교육부) 보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PART Ⅱ

유치원안전 현황

1 전년도 유치원 계획 추진실적

전년도 유치원 계획 추진현황

구분	점검내용	대상	시기	추진현황 ○	추진현황 △	추진현황 ×
안전교육 및 안전 체험활동	• 연중 생활주제별 관련 안전 교육 과정 계획 · 운영 –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전문강사 초빙 및 체험활동 실시 – 화재대피훈련(연 2회 실시) – 소방서 합동 재난대피훈련(연 1회 실시) – 지진대피훈련(재난대응안전훈련예방교육) • 모두가 함께 하는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	유아	연중	✔ ✔ ✔ ✔ ✔ ✔ ✔		
교직원 안전교육	• 각종 안전 관련 연수 참여 •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3년 이내 15시간 이상) 연수 참여 • 유치원 행사, 현장학습 관련 사전 안전교육 및 협의 • 유치원 비상대책반 구성(감염병 대책기구와 일원화)	교사	연중	✔ ✔ ✔ ✔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	• 유치원 아동학대 Zero화 추진 –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유치원 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노력 • 유치원 안전관리 및 점검 철저 –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운영	교사 학부모	연중	✔ ✔ ✔		
가정과 연계	• 안전교육 영역별로 부모교육실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교육활동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 놀이시설 이용 안전 수칙 사용자 교육 실시	학부모	월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 ✔ ✔ ✔		

전년도 유치원안전교육 추진실적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2023년)

구분 / 연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21.3. ~ 2024.2	2021	27	10	37	13	7	20	54.05
	2022	25	10	35	12	1	13	37.14
	2023	25	11	36	6	9	15	41.67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교원은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제 강사를 말함

관 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4조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2023년)

교육대상 교직원 수(명)			교육 실시 인원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이수율(%) (B /A)×100
25	11	36	25	11	36	100

관 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

안전영역별·교육과정영역별 유아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2023년)

구분	안전교육 영역								운영시간
7대 안전교육	생활 안전 교육 (13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10시간)	재난안전 교육 (6시간)	직업안전 교육 (2시간)	응급처치 교육 (2시간)	51차시
	기타 (9시간)	실종유괴 (4시간)							
아동안전 교육		실종유괴예방 방지교육 (10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8시간)	감염병 및 약물 오용 · 남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10시간)	재난 안전 교육 (6시간)			44시간
기관 필수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1회 이상)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 (연1회 이상)			보건 교육 (수시)	
배곧초록 운영시간	9시간	10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6시간	2시간	2시간	57시간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3호, 2023. 10. 16.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영역 분리**(참고 1, 22p 참조)

관 련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3조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학교안전사고 현황(2023년)

○ 활동별

활동시간별					합계
교육과정시간			기타교육활동시간		
대소집단 활동 시간		자유놀이시간	등하원	유치원 체류	
기타활동시간	신체활동 게임		하원	방과후과정	
1	1	2	2	3	9

○ 활동장소별

장소별					합계
공용공간	교수학습 및 학습지원공간		기타 교내	보건위생공간	
현관	일반교실	특별교실		화장실	
1	5	1	1	1	9

○ 사고 형태별

형태별						합계
둔탁한 힘에 의한 사고					기타손상사고	
낙상	부딪힘			스스로 신체에 충격을 가함 (염좌, 삐임)	그밖의 손상사고	
넘어짐	고정된 물체와	사람과	움직이는 물체와	물건을 운반하는 중		
2	3	1	1	1	1	9

○ 사고 행동별

행동별					합계
스포츠활동	아동	일상활동		학습활동	
기타 스포츠 활동	걷기,뛰기 오르내리기	기타 일상활동	장난, 놀이	일반학습	
				수업	
1	1	3	1	3	9

○ (학교안전사고 분석 결과)

- 교실내, 자유놀이시간, 긴장감이 낮아지는 방과후과정 시간 지켜야 할 규칙, 안전교육 철저
- 유아들이 부딪힐 수 있는 물건 들에 안전 장치를 하여 사전에 사고 예방
- 수업중, 일상 생활 중 안전 수칙 준수 강화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2023년)

○ 학교안전 실태조사 주요 결과표

조사문항		구분	배곧초록유치원	시흥교육지원청	경기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심장자동충격기(AED) 설치여부	전체건물(%)	V	88.8	90.9	93.0
		일부건물(%)		0.0	0.0	0.0
		미설치(%)		11.3	9.1	7.0
	[실내] 전체 CCTV, 200만 화소 이상 CCTV '22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실내 전체(대)	22.0	10.6	9.5	10.9
		실내 200만 이상(대)	22.0	9.1	9.1	10.2
	[실외] 전체 CCTV, 200만 화소 이상 CCTV '22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실외 전체(대)	11.0	13.5	12.3	12.3
		실외 200만 이상(대)	11.0	13.0	11.8	11.8
	교외 보차도 분리 '22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분리(%)	V	85.6	85.7	75.8
		일부분리(%)		13.4	11.4	18.5
		미분리(%)		1.0	2.9	5.7
	교외 무단횡단 예방시설(보도용 방호울타리 등) 설치 '22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모두설치(%)	V	70.1	71.6	61.5
		일부설치(%)		23.7	20.1	24.7
		미설치(%)		6.2	8.3	13.8
	학교주변 과속방지 시설 설치 '22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모두설치(%)	V	86.6	83.0	77.7
		일부설치(%)		8.2	13.5	17.2
		미설치(%)		5.2	3.5	5.0
	학교주변 과속단속장비(CCTV) 설치 '22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모두설치(%)		63.9	69.6	62.5
		일부설치(%)		23.7	17.2	19.5
		미설치(%)	V	12.4	13.2	18.0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단속장비(CCTV 등) 설치 '22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모두설치(%)		48.5	60.7	49.9
		일부설치(%)		19.6	20.1	22.0
		미설치(%)	V	32.0	19.2	28.0
	외부추락방지장치 설치 '22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설치(%)	V	90.7	89.6	82.8
		일부설치(%)		2.1	2.7	4.9
		미설치(%)		3.1	2.2	3.9
		해당없음(%)		4.1	5.5	8.3
	손끼임 방지장치(건물현관) '22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모두 설치(%)	V	85.6	82.0	75.6
		일부 설치(%)		13.4	10.5	14.2
		미설치(%)		1.0	7.6	10.2
	손끼임 방지장치(교실) '22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모두 설치(%)	V	60.8	55.2	51.4
		일부 설치(%)		13.4	16.4	17.2
		미설치(%)		25.8	28.4	31.4
교육환경	안전부(장) 전담	겸임(%)	V	72.5	76.4	79.9
		전담(%)		27.5	23.6	20.1
	안전관련 행사(캠페인 등) 운영	운영(%)	V	73.8	83.6	80.0
		미운영(%)		26.3	16.4	20.0
	등교 교통지도 실시	실시(%)	V	97.5	96.0	94.2
		미실시(%)		2.5	4.0	5.8
	하교 교통지도 실시	실시(%)	V	67.5	79.9	81.5
		미실시(%)		32.5	20.1	18.5
	등·하교 시 승·하차 공간 마련	마련(%)	V	42.5	49.1	53.6
		부재(%)		57.5	50.9	46.4

○ (학교안전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등하원시 승하차 공간이 있으나 비좁아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조치 계획

- (시·도교육청에 요구·협의할 사항)
  -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 보건교사 배치 필요성 건의
-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요구·협의할 사항)
  -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지속적 점검 실시
- (유치원 자체 계획)
  - 유치원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전 교직원 공유
  - 유아, 교사, 학부모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PART Ⅲ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계획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재난대비 비상훈련
3월	입학식, 개학식(3.4.) 유아 안전교육, 유치원 안전점검(3.4.)	학교 교내생활 안전교육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연간 훈련계획 안내 토론기반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3.6.)
4월	유아 안전교육, 유치원 안전점검(4.4.)	교통안전교육 화재 안전교육	황사·미세먼지 대응 훈련 화재대피 및 소방훈련
5월	유아 안전교육, 유치원 안전점검(5.7.)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재난 안전교육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5.14.)
6월	유아 안전교육, 유치원 안전점검(6.10.)	물놀이 안전 예방 지도 성폭력 예방 인형극 관람	지진대피훈련
7월	유아 안전교육, 유치원 안전점검(7.4.) 여름방학	아동권리교육 폭염 관련 예방 지도	
8월	개학식	물놀이 및 식중독 예방 지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8.21.)
9월	유아 안전교육, 유치원 안전점검(9.4.) 가족체육대회	안전사고 예방 중점지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지진대피훈련
10월	유아 안전교육, 유치원 안전점검(10.4.)	등산 및 야외활동 안전교육 눈 건강교실	
11월	유아 안전교육, 유치원 안전점검(11.4.)	화재 예방 지도 강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훈련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12월	유아 안전교육, 유치원 안전점검(12.4.) 졸업식, 수료식, 겨울방학	겨울철 안전교육 졸업식 전후 교내·외 안전교육	

재난 대비 훈련 연간계획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비고
3월	연간 훈련계획 안내 토론기반 민방위 훈련	토론기반훈련 토론기반훈련	모든 교직원 전체 유아	
4월	황사·미세먼지 훈련 화재 훈련	토론기반훈련 현장훈련	전 교직원 및 전체유아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현장훈련	전 교직원 및 전체유아	
6월	지진대피훈련	현장훈련	전 교직원 및 전체유아	
8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현장훈련	전 교직원 및 전체유아	
9월	지진대피훈련	현장훈련	전 교직원 및 전체유아	
11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워크숍 및 현장훈련 등	전 교직원 및 전체유아	소방서 합동

※ 학교 재난 대비 훈련 담당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 · 훈련 매뉴얼」(교육부)을 책자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

관 련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고시 제4조의2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안전약자(요보호학생) 현황 및 관리방안

○ 신학기 건강조사 등을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유아를 파악하고, 개별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돕고, 응급상황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안전 문화 확산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유치원 안전 자율 점검 및 가정 내 자율 안전 점검 홍보

–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국민생활 안전점검표’ 활용(학교안전정보센터 www.schoolsafe.kr)

○ **안전가치의 최우선적 인식 문화 확산**

– 유치원안전의 가치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제반 교육활동 계획 수립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적으로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는 유치원 문화 만들기

○ **안전업무 관련 교직원간 역할 명료화**

– 원장은 유치원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교원과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설정

– 유치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

※ 유치원안전은 담당 교원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원과 직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 필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계획

○ 다중밀집 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행사 진행 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간격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유치원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교외 행사장 방문 등

○ 사고 발생 시 119신고 및 응급조치(참고2) 등 상황에 맞는 응급조치 실시

2 유아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유치원안전교육 추진 계획

구분	실천내용	대상	시기
안전교육 및 안전 체험활동	• 연중 생활주제별 관련 안전 교육 과정 계획 · 운영 –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전문강사 초빙 및 체험활동 실시 – 화재대피훈련(연 2회 실시) – 소방서 합동 재난대피훈련(연 1회 실시) – 지진대피훈련 실시 – 민방위 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실시 • 모두가 함께 하는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	유아	연중
교직원 안전교육	• 각종 안전 관련 연수 참여 •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3년 이내 15시간 이상) 연수 참여 • 유치원 행사, 현장학습 관련 사전 안전교육 및 협의 • 유치원 비상대책반 구성(감염병 대책기구와 일원화)	교사	연중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	• 유치원 아동학대 Zero화 추진 –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유치원 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노력 • 유치원 안전관리 및 점검 철저 –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운영	교사 학부모	연중
가정과 연계	• 안전교육 영역별로 부모교육실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교육활동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 놀이시설 이용 안전 수칙 사용자 교육 실시	학부모	월 1회 연 1회 수시 수시

세부 추진 계획

○ 안전교육 및 안전 체험활동 계획

가) 연간 안전수업 시수

구분	안전교육 영역									운영 시간
7대 안전교육	생활 안전 교육 (13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 안전 교육(6시간)	직업 안전 교육(2시간)	응급처치 교육(2시간)	51차시
	기타 (9시간)	실종유괴 (4시간)			약물 (5시간)	사이버 (5시간)				
아동 안전교육		실종유괴예방 방지교육 (10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8시간)	감염병 및 약물 오용 · 남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10시간)		재난 안전 교육 (6시간)			44시간
기관 필수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1회 이상)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 (연1회 이상)				보건 교육 (수시)	
배곧초록 운영시간	9시간	10시간	10시간	8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2시간	2시간	57시간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3호, 2023. 10. 16.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영역 분리**(참고 1, 22p 참조)

나) 연간 안전교육 계획

(1) 생활안전교육 연간 지도 계획

시기	중분류	안전교육 내용
3월	생활안전	유치원에 왔어요, 교실에서 안전하게 활동해요, 화장실, 급식실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려요 미술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해요,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실종유괴 예방방지	유치원 가는 길
4월	실종유괴 예방방지	유괴 상황에 대해 알아요
	생활안전	미끄러운 곳은 조심해요, 끼임사고를 조심해요, 손을 올바르게 씻어요, 준비운동을 해요, 실외실내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5월	생활안전 실종유괴 예방방지	먹을 때는 안전하게, 대형마트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무빙워크 안전을 알아요 함부로 따라가면 안돼요
6월	생활안전	영화관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환풍구와 맨홀을 조심해요, 안전하게 공놀이를 해요, 바퀴달린 운동화 안전하게 신어요
	실종유괴 예방방지	미아보호소는 어떤 곳일까요?
7,8월	생활안전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안전하게 물놀이를 해요, 우리를 지켜주는 구명조끼
	실종유괴 예방방지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해요
9월	생활안전 실종유괴 예방방지	인라인, 킥보드를 안전하게 타요, 전기 감전을 조심해요1,2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동화-쳇, 어떻게 알았지?)
10월	생활안전 실종유괴 예방방지	안전하게 숲 체험 활동을 해요, 체험활동을 안전하게 다녀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11월	생활안전 실종유괴 예방방지	안전한 캠핑을 해요, 안전하게 등산을 해요 부모님 선생님께 알려요
12월	생활안전 실종유괴 예방방지	빙판길에서 안전하게 걸어요, 썰매, 스케이트를 안전하게 타요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요

(2) 교통안전교육 연간 지도 계획

시기	중분류	안전교육 내용
3월	보행자 안전	교통안전 표지판을 알아보아요, 신호등이 말해요(동시), 어른 손을 잡고 안전하게 건너요
	자전거 안전	자전거를 타기 위해 준비해요, 안전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요
4월	보행자 안전 자동차 안전	안전한 장소에서 놀아요 안전띠를 매요
5월	보행자 안전 대중교통 안전	횡단보도로 건너요, 육교는 왜 만들었을까? 차례차례 탑승해요,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6월	보행자 안전 자전거 안전	지하도로 안전하게 건너요, 안전하게 길을 건너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7,8월	보행자 안전 자동차 안전	도로에서는 뛰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걸어요 자동차의 특징을 알아보아요, 자동차 사고는 위험해요, 자동차 사각지대
9월	보행자 안전 대중교통 안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건너요 지하철, 배, 선박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10월	보행자 안전 자전거 안전	스마트폰을 보며 걷지 않아요 자전거를 잘 관리해요
11월	보행자 안전 자동차 안전	주차장에서 장난을 치면 안돼요 자동차를 안전하게 타요
12월	보행자 안전 대중교통 안전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만나면 교통안전 퀴즈

(3) 폭력 및 신변 안전교육 연간 지도 계획

시기	중분류	안전교육 내용
3월	학교폭력 성폭력	내가 먼저 다가가요 싫은 접촉에 대처하는 방법
4월	아동학대 자살	포돌이 포순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알아봐요 모두가 특별해요, 작은 생명의 소중함
5월	성폭력 가정폭력	내 몸의 소중한 곳은 보여주지 않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볼까요?, 가정 폭력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6월	성폭력 아동학대	기분 나쁜 접촉에는 이렇게 대처해요 어른들이 나를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7,8월	성폭력 학교폭력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질 때 대처방법 친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9월	학교폭력 성폭력	친구가 때리면 이렇게 해요 나쁜 비밀에 대처하는 방법
10월	학교폭력 성폭력	신체폭력을 쓰지 않아요 나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11월	학교폭력	예쁜 말을 써요, 사이좋게 지내요,
12월	학교폭력 아동학대	지나친 장난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중해요

(4)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연간 지도 계획

시기	중분류	안전교육 내용
3월	약물중독	제대로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 내 몸을 위한 약 바르게 먹을 수 있어요 함부로 먹지 않아요
4월	사이버중독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5월	약물중독	안전하게 약을 버릴 수 있어요, 몸에 해로운 약물이 들어있는 음료수가 있어요
6월	사이버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은 위험해요, TV를 올바르게 시청해요
7월	약물중독	약을 올바르게 보관해야 되요, 화학제품, 먹으면 위험해요
8월	사이버중독	스마트폰 중독 예방 약속 정하기, 스마트폰 안전하게 사용해요
9월	약물중독	담배는 나빠요, 엄마 아빠 담배는 싫어요! 콜록콜록 담배연기 싫어요!
10월	사이버중독	건강 체조를 해요
11월	약물중독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이 아파요, 엄마, 아빠 술은 안돼요!
12월	사이버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위험해요

(5) 재난안전교육 연간 지도 계획

시기	중분류	안전교육 내용
3월	화재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보아요
4월	사회재난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알아보아요, 빨간모자와 미세먼지 봄철 황사를 조심해, 특명! 자외선을 차단하라
5월	화재	불이야! 불이야!, 숨지 마세요, 연기를 피해요
6.7,8월	자연재난	태풍 집중호우 위험해요, 지진해일은 무엇인가요? 땅이 흔들려요 낙뢰가 칠 때,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 폭염대비 건강 수칙
9월	화재	119에 신고해요, 안전하게 대피해요, 멈춰요·엎드려요·뒹굴어요
10월	사회재난	미세먼지 때문이야, 쾅! 폭발은 무서워, 어떻게 도와줄까요
11월	화재	불의 이로움에 대해 알아보아요, 불은 위험해요
12월	자연재난	눈에서 대설까지, 한파·폭설

(6) 직업안전교육 연간 지도 계획

시기	중분류	안전교육 내용
3월	직업안전의식	유치원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들도 다칠 수 있어요
4월	직업안전 의식	보호장구를 착용해요
9월	직업안전의식	누가 꿈길 선생님을 다치게 했니
10월	직업안전의식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은 안전할까

(7) 응급처치교육 연간 지도 계획

시기	중분류	안전교육 내용
5월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및 상황별 응급처치	응급이 뭐에요? 응급처치 송, 동물에게 물렸어요,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7월		도와줘요 119, 화상, 어떻게 할까요? 뜨거운 물을 위험해요!
10월		앗,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눈,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11월		손가락을 다쳤어요, 코피가 났을 때, 피가나요!

라) 나·침·반(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안전교육 계획

대상	내용	시기	방법
교사	나·침·반 안전교육 연수	3월	나·침·반 안전교육자료 활용방법 안내
유아	월: 생활 안전 화: 교통 안전 수: 재난 직업 보건 목: 폭력예방 신변안전 금: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교육청 제공 나침반 안전교육자료 활용	연중	– 매일 5분 자투리 시간을 활용 – 요일별로 주제를 정하여 교육 – 동일 주제를 심화·반복학습
가정	가정연계 교육자료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탑재	연중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탑재

관 련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3조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2024년)

구분	총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대상 예정자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A)×100
인원	27	11	38	–	–	–	–

※ 2024년은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4주기(2024~2026) 중 첫번째 해에 해당함

관 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4조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2024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예정 인원 수(명)			실시비율(%)
교직원 수			교직원 수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27	11	38	27	11	38	100

관 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

교직원 대상 연간 안전 관련 교육 및 연수 계획

시기	영역	안전교육내용	교육형태	법률 근거 및 연간시수
3월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 전달연수	교사 자체 연수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교사 자체 연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시간 이상)
4월	재난안전	화재대피훈련 관련 연수	교사 자체 연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2조
	성폭력 예방	성교육 및 초기 대응 방안 교육	교사 자체 연수	
	약물·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교사 자체 연수	
5월	정보 관련 안전	개인 정보 보호 교육	교사 자체 연수	정통망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3조 2항 (연 2회 이상)
	재난안전	민방위 훈련 연수	교사 자체 연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2조
	성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원격연수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성폭력방지법 제 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3 (각 1시간 이상)
6월	재난안전	지진대피훈련 관련 연수	교사 자체 연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8월	재난안전	민방위 훈련 연수	교사 자체 연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2조
9월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전문가 초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 (연 4시간 이상)
11월	재난안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연수	교사 자체 연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정보 관련 안전	개인 정보 보호 교육	교사 자체 연수	정통망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3조 2항(연 2회 이상)

학부모 대상 안전 교육 실시 계획

월	영역	안전교육내용	교육형태
3	생활안전	안전한 유치원 생활	가정통신문
3	폭력 및 신변안전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부모 연수 및 교육자료 배부
4	재난대비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정통신문
5	생활안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6	생활안전	여름철 물놀이 안전	가정통신문
9	교통안전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10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전문가 초청
11	약물·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12	재난대비	겨울철 눈 오는 날 안전	가정통신문
연중	생활안전	유치원 행사 및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및 현장교육 실시

3 안전한 교육 활동 여건 조성

학생보호 인력(유치원안전지킴이) 운영

주요 활동 내용

- 유아 등 · 하원 지도 및 유치원 순시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외부인 출입 통제
- 정문 지도, 통학 안전 지도, 교통안전지도
- 기타 당해 유치원장이 명하는 안전 조치에 관한 업무 제반

학생보호인력 관리

- 총관리책임자: 원장
- 업무 총괄 및 예산 집행, 운영일지 관리: 담당교사

근무기간 및 근무일

- 근무시간: 08:00~10:30 (2시간 30분)
- 근무일: 2024.3.4.(월) ~ 12.27.(금) (재량휴업일 및 방학 기간 제외)

유치원 시설 안전 점검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

1)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6
2) 시행일자: 매월 4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탄력적으로 실시)
3) 활동내용
   -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 안전사고 예방 등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전개
   - 유치원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안전교육 지속 실시
   - 재안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자료 활용, 나침반 교육자료 활용
   -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예방 및 대응 관련 조치 철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철저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가) '월' 안전 점검 실시 및 놀이기구 유지관리(관련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나) 법적 주요 의무사항
   (1) 정기시설검사(법 제12조: 2년 1회 이상)
   (2) 안전교육(법 제 20조: 2년 1회 4시간 이상)

(3) 보험가입(법 제21조: 매년 3월 2일 갱신)

다) 놀이시설 이용 안전수칙 교육 및 안내

○ 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 급식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청소,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유아 및 조리종사자 손씻기 실천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식재료품질 및 식품안전관리 기준 준수하여 위험요소 사전 예방
- 유치원 급식소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협조
- 유치원 급식 종사자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 적극 안전 및 지원
- 화상, 넘어짐 재해 등 가장 빈번한 산재발생형태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

[식중독 발생 시 대응절차]

구분	수행 사항	관련 담당
<1단계> 발생인지	• 결석생 사유 파악 및 보건실 방문 유아 관찰 후 교내 보고 • 유치원장 주재 대책협의를 통해 신고 여부 등 결정 ▷ 대책협의 : 관리자, 보건담당교사, 영양교사 등 참석 – 유증상자 현황 파악, 신고 여부 등 결정 ※ 보건소에 단순 문의 주의(신고로 오인)	담임교사→ 보건담당교사→ 유치원장 유치원
<2단계> 발생보고	• 유치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 ▷ 유치원단위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유치원→보건소 및 교육지원청→교육부
<3단계> 원인·역학조사 준비 및 실시	• 원인·역학조사 전 확인사항 준비 철저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경위, 최초증상 일자, 주요증세(설사, 구토 횟수) 등 파악 및 기록 철저 – 가급적증상이 심한 유아들 대상으로 보건실로 이동토록 안내하여 보건실에서 1:1면담 조사 실시 – 역학조사 종료 전까지 유아들 귀가 보류 ※ 교내방송, 반별 손들기 등 전수조사 금지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적극 협조 ▷ 환자규모·분포도, 특이사항 파악 등 조사 협력 – 보존식 및 환경검체(조리도구, 음용·조리용수 등) 수거 – 설문조사(환자·대조군 조사), 채변검사 실시	–유치원 –교육지원청 및 지방 식약청 –시·군·구(위생부서) –관할보건소 (감염부서)
<4단계> 조사 후 조치	• 유치원급식 제공 여부 결정 • 급식실, 교실 등 유치원시설 대청소 및 소독·방역 •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유도 • 학교안전공제회에 발생 사실 통보 • 언론보도 대응 철저	유치원 각 기관
<5단계> 모니터링	• 유증상 유아 지속적 모니터링 • 개인위생관리 지도 및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유치원 교육지원청

유치원 출입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안전관리 방침

가) 재난 종류 및 위험도에 따라 출입구 및 비상구 개폐 신속 결정(원장)

나) 외부인 및 위험물 1차 검수(행정실) 및 보관 사용 관리 지정(각 담당자)

다) 유치원 안전지킴이 자원봉자활동으로 학생보호인력 활용 및 고화소 CCTV 설치로 안전망 구축

출입 방침과 절차

가) 출입문 개폐

(1)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실무사 및 주무관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함

나) 본원 방문 시 지켜야 할 사항(방문증 제도)

(1) 방문객은 교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달아야 함.

(2) 방문시(출입차량)에는 행정실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제시하여야 함.

(3) 출입증은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본원 방문 및 방문증 발급 장소, 절차

(1) 방문증 발급 장소: 현관 입구 행정실(08:40~16:40, 근무시간)

출입 절차

행정실 방문 → 본원 방문 대장 기록 및 신분증 제출 →
방문증 발급, 달기 → 방문증 반납 및 신분증 회수

방문증 번호 20○○-00 **방문증** 귀하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배곧초록유치원장**	▪ 원내에서는 항상 출입증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퇴교 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면(23.5cm × 10.5cm)	뒷면(23.5cm × 10.5cm)

라) 원장이 출입 거부, 퇴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상행위 목적이나 교직원이 출입을 제한한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제한하거나 위의 출입 관련 수칙 위반 등 유치원 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입이 거부됨

마) 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1) 교직원과 유아를 대상으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를 발견 시 즉시 원내 학생보호인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함

(2) 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 기록대장 장소로 인계하여 절차에 따라 안내하여야 함.

원내 차량 통행 및 주차관리 방침

- **차량 통행 및 주차 관리**
  - 교직원의 출퇴근 및 원아 등·하원 시 인명사고 방지 및 외부인 출입통제
- **관리 및 통제 방법**
  - 외부차량 출입 : 교직원출입차량 및 비상차량(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를 제외한 외부차량의 출입시 방문 담당자의 출입안전 확인(외부인 포함)

물품 수령 방침과 절차

구분	내 용
수령방침	• 교무실 및 행정실에 연결된 인터폰으로 통화하여 신분확인 후 출입을 허가 • 각종 위험물 차단 및 해당 물품의 담당/소유자 확인 • 위험물, 부패가능 식음료의 안전 보관 • 식자재의 경우 영양사가 담당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장소에서 수령 • 사적물품 수령 금지
수령절차	• 물품종류(위험물, 식음료, 기타 물품), 수령인 확인 • 검수장소(교무실, 행정실), 수령인 파악 • 수령인의 직접적인 검수 및 수령

비상탈출구 관리

- 유치원 비상대책반 중 현장대응반은 건물 각 층 유리창문과 비상시 탈출구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민방공 훈련 시 비상탈출구를 활용하여 실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 **원내 시설 개방 방침**

가) 보안상의 이유로 원내 시설(교실, 강당 등)의 원칙적 개방 금지

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방은 요구처의 사용안전계획 검토 후 예외적 허용

- **안전관리**

가) 사용기관의 시설 사용/안전계획서 및 관련 공문 검토 후 이용방침 통보

나) 이용 후의 위험요소 제거 확인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

- **목적**

가) 유아의 등·하원 길 생활 속에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유치원을 구현

나) 등·하원 길 위험요소 실태 조사 및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

- **방침**

가) 유치원 통학안전 자체점검을 실시

나) 유아, 학부모, 교원 대상의 통학안전 예방교육을 실시

- **관리현황**

가) 보호자와 함께 등원 및 하원 함을 원칙으로 함

나) 학생보호인력, 사회복무요원, 시설주무관, 원장, 원감, 교무부장 등원시간 임장 지도

비상 배낭 마련과 관리

- 유치원과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교실배치도), 유치원교직원 명단, 화재경보기 작동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등이 담긴 비상배낭(구명로프(10m이상), 손전등, 비상약품, 차량 탈출용 망치, 칼, 면손수건, 호루라기 등)을 행정실에 비치하여 보관·관리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 방침

- **방침**: 비상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실 내 상시 비치함
- **관리 방법**

가) 행정실장 및 시설주무관은 분기별로 마스터키(비상열쇠)를 점검하여 보안 관리 철저히 함

나) 비상 시 시설주무관은 마스터키(비상열쇠)를 들고 대피장소로 이동함

보관구역 관리 방침

- **시설 장비 및 화학물질 기타 위험물 관리**

  가) 원아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공간(각종 창고)에 보관

  나) 원아의 동선과 겹치는 각층 전기 및 소방 장비는 시건장치 및 출입통제 확인 철저

- **보관구역 관리**

  가) 식료품: 급식실 및 유치원 1층 주방 내 냉장고에 비치하고 영양사가 관리함

  나) 유해물질

  (1) 세제류 : 유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화장실 옆 수납장에 비치하고 청소도우미가 관리함

  (2) 화학류 : 각 반 교실 내 유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상부장에 비치하고 교사가 관리함

  (3) 약품

  (가) 원무실 내 약품장에 비치하고 각 반에서는 비상약품가방을 비치하여 관리함

  (나) 보건담당교사가 약품목록을 작성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즉시 폐기처리함

4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개요

- 유아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강한 몸과 마음을 형성하여, 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 성장기 유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건강 기반을 마련한다.

세부추진계획

영역	세부 내용	시수	내용
건강관리	요양호 유아 관리	1회(3월)	응급처치 동의서 및 비상연락망 취합 건강이상아, 요양호 유아 파악 및 관리
	체격 검사	2회(3월,10월)	자동신장계를 이용하여 키, 몸무게 측정
	유아 건강검진	연1회 이상	학부모에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안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확인
건강교육	청결한 위생습관 실천교육	수시반영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감염병 예방교육	수시반영	
	올바른 식습관 교육	연간 2회 이상	
	당뇨병 및 희귀질환 지원관리	연간 2회 이상	소아당뇨 및 희귀질환 유아 파악 지원계획 수립(해당유아 있을 경우) 유아 및 교육공동체 대상 인식개선 교육,홍보
	눈건강 교육	연간 1회 이상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교육프로그램 활용
정신건강증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등	연간 1회 이상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미세먼지 대응교육	미세먼지 대응교육	연간 운영	대기질 나쁨 이상 발령시: 바깥놀이, 현장학습, 실외수업 등 취소 및 실내 대체활동 진행
환경위생	정기방역 소독	월 1회	행정실 협조
	교실 공기질 측정	학기당 1회	
	정수기 · 공기청정기 점검	월 1회	
	수질검사	연 4회	
가정과 연계	가정으로 보내는 건강통신문	월 1회	미세먼지, 감염병 등 유아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안내문을 가정으로 발송

* 교육기준(학교보건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연간교육계획

영역	내용	비고
위생교육	화장실 사용법 알기 화장실, 급식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바르게 손 씻는 방법 알기 양치의 중요성 알기 및 바른 칫솔질하기 위생적인 양치도구 사용법 알기 자기 주변과 몸 깨끗이 하기 개인물품과 자기 주변 및 교실환경 깨끗하게 유지하기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연계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을 씻어요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는 방법 알고 실천하기(손 씻기, 양치질하기, 입 가리고 기침,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내 눈이 빨개요.(눈병예방교육) 환절기 질환 (감기,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환)과 관련하여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 알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안전교육과 연계
식습관 교육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식품 첨가물 유해성 알기 식중독 예방법 알기 골고루 먹어요.	안전교육과 연계
눈건강 교육	눈건강 생활수칙 아이에게 잘 발견되는 눈질환 취학 전 아동 눈건강	안전교육과 연계
정신건강 교육	인터넷 중독은 위험해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약속 스마트폰 바르게 사용해요. (스마트쉼센터 연계)	안전교육과 연계
미세먼지 교육	황사와 미세먼지는 위험해요. 먼지가 돌고 돌아요. 까만 먼지로부터 나를 지켜요.	안전교육과 연계

PART IV

안전 대응 및 행동 수칙

1 아동학대 예방

예방

1)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2) 교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확인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가)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복지법 제 26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교직원
   다) 신고의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함
   라) 교육: 대상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1시간 이상 교육
   마)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대처사항

구분	내용
교사의 아동학대 징후 인지	• 아동의 상처에 대해 보호자의 설명이 모호한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신고 의무사항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에 '의심이 있는 경우' 에도 신고 의무 부과(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고 기관	• 반드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신고 내용	• 아동의 *이름, *주소, 성별, 나이 • *내용(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등) •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나이(성인여부), 이름, 성별, 주소 ※ "*"필수사항

2 미세먼지

○ 미세먼지 예보제

1) 목적: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2) 예보권역: 경기남부, 경기북부 2개 권역

3)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_{10})	0 ~ 30	31 ~ 80	81 ~ 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_{2.5}$)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급은 PM10과 PM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4)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1) 미세먼지 담당자가 예·경보 상황을 상시 확인

2) 실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 단계별 조치사항 실시 및 경보발령 시 조치결과 보고(교육지원청, 7일 이내)

3)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 임시휴업의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지원)청에 보고

○ 단계별 조치 사항

< 대응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구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발령해제 및 결과보고
유치원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교육, 대응방안 검토	미세먼지 농도 확인, 실외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7일 이내→교육청)

1) [1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가) 상황: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7시 기준)

< 예보 “나쁨” 이상 요건 >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될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36㎍/㎥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나) 조치사항

< 사전 준비사항 >

- 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체, 외출 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강당수업)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 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유아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유아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학년 초 유치원은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생 등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
  - 담임교사는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보건실에 상비약, 보건용 마스크 등 구비
-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의 마스크 사용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주의 사항 안내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문자 발송(마스크 착용 후 등교, 행동요령 안내 등)
-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수시 확인(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점검

2)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 상 황: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 ~ 18:00)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건 >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2.5 36㎍/㎥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및 에어코리아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1시간 단위 업데이트

나) 조치사항

- 담당자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유치원 실외수업 자제,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교육실시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외부 노출 시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안내, 보호자 비상연락망, 문자를 통한 조치상황 공지

3) [3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가) 상황

< 주의보 발령 요건 >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나) 조치사항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교육 실시
■ 유아·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유아 관리대책 이행
※ 천식, 아토피 등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유아 건강 체크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 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조정을 검토
※ 임시휴업을 한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
※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 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 함께 결정
–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유아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대리인) 동행

4) [4단계]미세먼지 경보 발령

가) 상황

< 경보 발령 요건 >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나) 조치사항

■ 실외 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기상예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하교시간 조정을 적극검토하고, 휴업을 검토
■ 조치결과 보고 <7일 이내→교육지원청>
■ 외출시 마스크·보안경 등 착용, 손과 눈·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물 섭취등 행동요령 교육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상비약, 마스크 등 비치)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

5) [5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가) 상황

< 발령 해제 요건 >

○ 주의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

나) 조치사항

<주의보 발령 해제시>

■ (공통) 발령 해제 내용 전파 및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경보 발령 해제시>

■ 주의보 전환: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전체 해제 : 발령 해제 내용 전파 및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6) [6단계]조치결과 등 보고

■ 경보발령 현황 및 조치결과 등 보고

3 감염병 대응

○ 개요

1) 대응 체계

원장	
각종질병 발생 보고 및 감시	□ 유치원 질병 감시 담당자 :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 관찰대상 – 병결 유아에 대한 결석, 조퇴 사유 파악 – 현재 증상이 있는 유아 (학급 유증상자 등)

원장 · 의사	
진단·확인 보고·신고	□ 첫 발생환자 보고 : 원장(원감) □ 진단: 병의원 의사 □ 병·의원에 진단 및 진료 의뢰, 의사 진단 확인 □ 교실내 소독 및 예방교육 □ 감염병 확진 시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에 통보

교육지원청, 보건소	
감염성 여부 및 유행규모 파악	□ 유사환자 신속 파악 □ 유행 및 집단발병 여부 판단 □ 유행여부에 따라 유치원에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 □ 방역당국 역학조사 의뢰

역학조사	
(방역당국)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방역당국 – 교육청 – 유치원)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보고 및 출결관리	환경위생관리	보건교육
‣ 환자 검체 채집 ‣ 설문조사	‣ 치료조치 ‣ 격리조치 ‣ 접촉자 파악 ‣ 발병 감시	‣ 등원중지 처리 ‣ 휴원휴업 검토 ‣ 보고체계 구축	‣ 규칙적인 환기 ‣ 소독 실시 (시설물, 취약 지역 등)	‣ 질병예방교육 ‣ 개인위생교육 ‣ 학부모 교육

2) 법정감염병

-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으로 구분되는 감염병

제1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6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
제2군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12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
제3군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등(19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예외 : 인플루엔자는 7일 이내)
제4군	•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동물인플루엔자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
제5군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6종) • 의료기관 신고 : 7일 이내
지정	• C형 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17종) • 의료기관 신고 : 7일 이내

3) 감염성 질환의 특성 및 주요증상

질병	주요증상	전염가능 기간	등원중지 기간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카타르기에 가정 전염성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홍역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 부종	침샘이 커지기 1~2일 전부터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증상발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피로감, 피부발진, 수포	수포가 생기기 1~2일 전부터 모든 수포에 딱지가 형성될 때까지	모든 수포에 딱지가 형성될 때까지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가래	증상 발생 1~2일 전부터 7일 혹은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해열된 후 2일 후까지
수족구병	발열, 손·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 피부 병변에 액체가 남아있는 동안	발병 후 1주일까지
결핵	발열, 전심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증상 시작 ~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유행성 각 · 결막염	안통, 충혈,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등	잠복기 이후부터 발병 후 2주까지	증상이 사라진 후 2일 경과할 때까지

나. 예방

1) 감염병 발생 차단 및 예방교육

가) 유아, 교직원, 보호자(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탑재) 보건교육 실시

나) 손 씻기 철저 지도 : 하루에 8번 이상 30초씩('1830'손 씻기 운동) 세정하는 것을 원칙

다) 예방접종 지도

라) 규칙적으로 실내 환기,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

마) 소독: 교실 장난감· 세면대·문손잡이· 책상 등, 행정실의 협조를 받아 원내 시설 방역

바)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품(마스크, 체온계 등) 및 위생용품(비누, 손소독제 등) 구입

사) 교실내 감염병 예방 교육 게시물 및 각종 홍보물 부착

아) 점심 및 간식 먹기 전 손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적극적인 예방교육 실시

자) 기침예절, 바른 마스크 사용 등 위생수칙 안내

다. 대처

1) 평상시 대응

가) 단계 및 주요 대응

단계		상황	주요 대응 내용
대 비		•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전	▸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서 수립 및 감염병 예방활동 시행 ▸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처요령 교육 ※ 대응단계에 따라 추가교육 실시
대응	1 단계 유증상자 발견 시 대응	• 유치원내 감염병 유증상자 1명 이상 확인	▸ 초기 응급처치 실시 ▸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 등원중지 안내 및 병원진료 의뢰
	2단계 환자파악 및 유행여부 판단	• 유치원내 감염병 확진 또는 의사환자 1명 이상 발생	▸ 유치원내 감염병 유행 감시 – 담임교사 : 학급별 환자 파악 – 보건담당교사 : 학급별 환자 집계 분석 ▸ 감염병 발생양상에 따른 유행여부 판단 ▸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 확진환자 발생시 상황을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3 단계 유치원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및 확산방지	• 유치원내 감염병 유행 <유행 판단기준(예시)> • 동일 학급내 2명 이상 발생 • 급성열성호흡기 질환 :전체 인원의 5% 발생	▸ 유치원 감염병 대책기구 운영 현장대응반(담임/안전부장/보건담당/교무부장 등) : 유증상자, 접촉자, 2차 감염의심자 등 파악하여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림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유아 및 학부모 보건교육 진행 ▸ 교내지원팀(담임/방과후 전담사등) : 등교중지 출결확인 및 가정학습관리, 유증상자 처치 및 진료의뢰, 의심환자 관리, 상황판 작성 ▸ 정지원팀(행정실장) : 방역, 예산지원, 역학조사 협조, 대내외 홍보
	4 단계 상황 종료	• 새로운 환자가 발생 하지 않음 • 파악된 모든 접촉자가 최대잠복기까지 의심 증상이 없음	▸ 보건담당교사 : 기간별, 학년별 확진 환자 수, 처리 내용, 역학조사 내용 등을 정리하여 감염병 발생 종료 보고

나) 감염병 발생 유아를 격리, 등원중지, 보호자와 연락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함
(1) 감염병 유행시 대중시설이나 단체 활동 자제, 유치원에 외부인 출입 자제
(2)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유도, 기침시 코와 입을 가림
다) 감염병 발생 시 등원 중지 조치
(1) 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2) 담임교사는 의사진단에 의거 감염성 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원중지를 시킴
(3) 등교 중지 학생이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하고,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함.
(4) 등교중지, 격리, 감염병 조치 등은 '학생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함

2) 국가위기상황발생시 감염병(예: 코로나 등) 감염자 예방 및 관리
가) 관리자는 교육지원청 및 행정구역 관할 시군구 보건소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
나) 감염병 담당자(보건업무 교사)는 유아·교직원 및 기타 방문객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다) 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구비
라) 손잡이, 계단, 엘리베이터 버튼 등 소독(방역) 강화
마)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 및 결석생 수 확인과 호흡기, 발열, 소화기 및 기타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업무 교사에 연락함
바)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학부모와 연락 및 즉시 등교 중지하고 관할 보건소 및 병의원에 진료 연계함
사) 감염자에 대한 치료 상황을 파악하여 가정에서의 격리 치료에 따른 협조 사항 안내
아) 등교중지 중인 원아가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염 사례 차단
자) 유아·학부모 대상으로 예방교육,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안내

3) 국가위기상황발생시 감염병(예: 코로나 등)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가)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함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나)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다)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N95 또는 동급)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담당자는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N95 또는 동급) 착용, 보건소 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라)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교육부 동의를 받아 시행
마)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4 성교육 계획 및 초기 대응 방안

○ 목적

1) 성폭력 예방 중심의 유치원 성교육과 함께 유아 발달과 타인과의 관계에 따른 성 인지 교육을 통해 유아의 성 관련 지식, 기술 및 태도 신장
2) 유아 성 행동(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 성 행동 문제 예방 및 사안 발생 시의 대응 능력 제고

○ 방침

1) 개정 누리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 대상 성교육 실시
2)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동화, 장소·상황에 따른 역할극, 시청각 자료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3)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운영
4) 유치원 성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하여 수시 관찰 및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보고 체계 마련

○ 세부실천계획

1) 성교육 담당 업무 분장

구분	성명	역할
원장	윤영연	▸ 유치원 내 성교육 및 성 행동 문제 담당 교사 지정 및 연수 이수 지원 ▸ 성 행동문제 발생 시 담당교사와 함께 지원 요청 및 초기조사 협조 등 대응 총괄
성교육 담당교사	보건담당교사	▸ 관련 교육 이수 후 학급 담임교사에게 전달 연수 실시 ▸ 유아 대상 성교육 및 부모와의 소통 기획 추진 ▸ 성 행동문제 발생 시 사안 초기 조사 및 지원 요청 등 대응
학급 담임교사	각 학급 담임 13명 전담교사 1명	▸ 성교육 전달 연수 이수 및 개별 온라인 교육 이수 ▸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및 지도·관찰 ▸ 성 행동문제 발생 시 상황 파악 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에게 즉시 보고

2) 유아 性행동 수준 진단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수준별 유아 성행동 기준에 따라 성행동 진단

구분	수준	판단기준	행동의 특성
성 행동	일상적인 수준 (=일반적인 성 관련 행동)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환 가능 여부	▸ 놀이를 제안하면 관심을 보임 ▸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
성 행동 문제	우려할 수준	○지속성 ○반복성 ○은밀한 행동 여부	▸ 다른 놀이로 흥미를 끌어도 성 행동의 중단이 어려움 ▸ 잠시 멈추었다가도 성 행동을 반복하고 지속함 등
	위험한 수준 (또래 간 성적 괴롭힘 포함)	○지속성, 반복성, 은밀한행동 여부 ○강요 및 폭력성 ○타인의 심신 피해 발생 여부	▸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다른 놀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음 ▸ 유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저항하거나 분노 행동을 보임 등

3) 性행동 문제 대응 관리

수시 관찰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보고 체계 유지

행동 수준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유치원 대응	■ 유아 성교육담당자 지정 ■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 지도, 관찰 ■ 일상적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교육 ■ 유치원 초기 대응 철저 ■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문 요청	■ 행동중지, 상황 파악 ■ 부모 면담 ■ 유치원 사안 대응 지원단 운영 ■ (필요시) 학부모, 유아 대상 관련 교육 ■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문컨설팅 지원 요청	■ 즉시 중지, 분리 조치, 모든 유아 보호 ■ 상황 파악 ■ 보호자 연락, 피해 아동 치료 연계 ■ 유치원 사안 대응지원단 운영 ■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및 지원 요청

4) 성교육 연간 계획

시기	내용	활동방법
3월	싫은 접촉에 대처하는 방법	이야기나누기
5월	내 몸의 소중한 곳은 보여주지 않아요	이야기나누기
6월	초청 인형극 관람	공연관람
7월	기분 나쁜 접촉에는 이렇게 대처해요 아동권리교육	이야기나누기 전문가 초빙
8월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질 때 대처방법	이야기 나누기
9월	나쁜 비밀에 대처하는 방법	이야기 나누기, 동화
10월	나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야기 나누기

5) 기대효과

가) 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성교육으로 유아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나) 유아 성 행동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 제고

PART V

안전사고 피해회복

1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학 생	사고 발생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학 교	사고 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GGP1527/chfhr*****) • 내부결재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학 생	치 료	• 병원치료
학 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 청 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학 교)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해당지역 공제회 및 시스템에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학부모	심사청구	•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및 제3자	사고 발생	• 학교배상책임사고 –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승강기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학 교	사고 통지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학 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3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 상담 및 치료 지원

1) 유치원안전사고 및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유아를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2) 위기사안 발생시 지역의 위(Wee)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

3) 유아의 건강한 유치원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유치원 안전사고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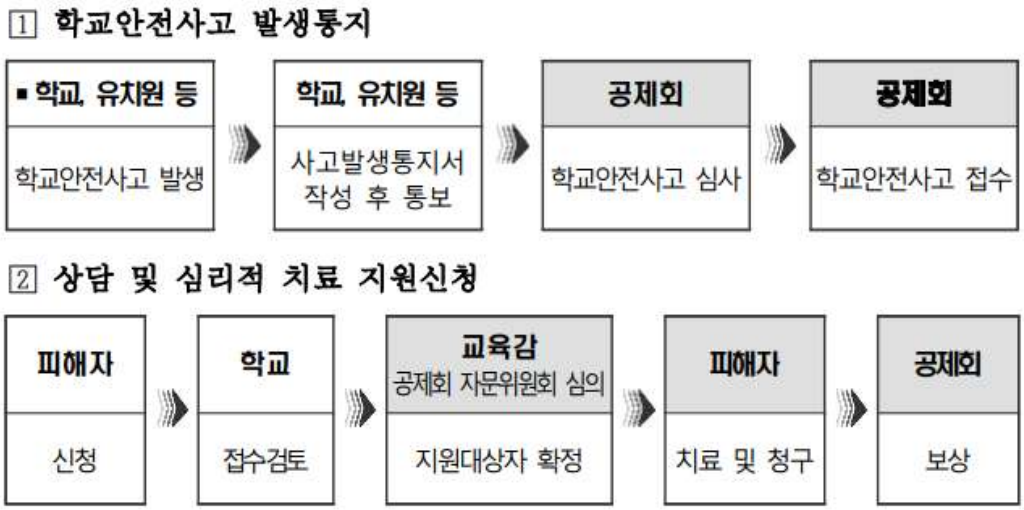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피해 복구

1) 재난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복구비 지급 신청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복구비 신청절차**

재난발생 → 공제회로 재난 발생신고 →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류 송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경기인청부 ☎ 02-781-0152

PC 및 스마트폰 청구 가능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청구가 간소화됩니다!

공제급여 청구절차

01 시스템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s://schoolsafe.or.kr)에 접속

02 화면에서 청구서 작성
PC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청구서 바로 작성 (프린트 할 필요 없음)

03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도 (우편발송 없이) 바로 PC나 모바일로 업로드

04 심사 및 지급
공제회에서 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

PC 및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공제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schoolsafe.or.kr/) 접속
- 공제급여 청구 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구서 작성시 각종 구비서류(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를 이미지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
- 다양한 환경(IE, Chrome, Safari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을 이용해 공제급여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사용자 통계 기능도 강화됐어요!

문자 및 숫자로만 표현되던 통계를 이젠 **시각화된 그래프 형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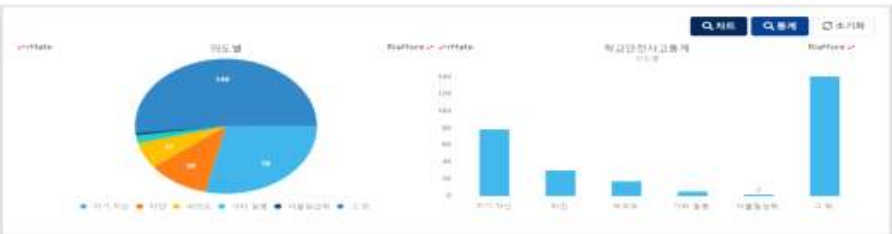

참고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약물 중독 예방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시간	유치원	13	10	8	5	5	6	2	2
	초등학교	12	11	8	5	5	6	2	2
	중학교	10	10	10	6	4	6	3	2
	고등학교	10	10	10	7	3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인해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시수,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내용	유치원	1. 교실, 가정, 등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2.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3.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5.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3. 어른과 손잡고 걷기 4.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내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 2.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4.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3.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2.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4.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2.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3. 손씻기와 소득하기 등 청결유지 하기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초등학교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6.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중학교	1.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티켓 알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3. 실험·실습실 및 체육·여가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3.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4.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아동학대 포함) 5. 성폭력 대처예방 및 대처법 알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2.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3.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알기	1.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6. 성매매의 위험성 인식하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고등학교	1.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기 2.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 3. 체육 및 여가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알기 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5. 자신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식하기 6.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아동학대 포함)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2. 작업장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3.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교육 방법		1.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2.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3.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참고2 안전사고 조치 및 대응 방법

1. 상황파악·전파

❑ 환자 상태 파악

○ 피해자의 전반적인 모습·행동과 주변환경, 추가위험(2차 피해) 여부 파악
(필요 시 피해 부위 사진 촬영)

○ 상태 파악 시 교내 응급처치 여부 및 응급환자* 여부 파악 필요
* 응급환자 여부 파악 방법 : 의식소실, 호흡곤란, 과다출혈 등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참조

○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 최초 발견자는 담당교사* 등 인근에 있는 교직원 등에게 상황전달
  * 담당교사 :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를 의미

최초 발견자	세 부 내 용
학 생	• 인근에 있는 최초 발견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교직원	• 보건교사와 담당교사에게 상황전달 • 상황 전달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는 등 질서 및 생활지도 수행

❑ 생명 위급상황

○ 최초 발견자가 즉시 119 신고(신고 후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구 분	세 부 내 용
신고상황	• 의식소실 등 환자 상태가 위급 시 119 즉시 신고 •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119 신고(문의)
전달내용	• 사고 장소, 주요 건물, 사건/사고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응급처치 내용, 다른 질문이 없는 지 확인
주의사항	• 먼저 전화를 종료하지 않음 • 구조대가 출동 후 관련 정보를 다시 물을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전화를 사용하지 않음

2. 응급조치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상황별 응급처치 시행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상처, 코피, 탈구, 염좌 등 [붙임 #2] 참조

○ 병원 이동(필요 시)
- 교내 응급처치 결과 추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피해학생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락
- 학부모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 또는 학교에서 가까운 병원 등으로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지정
- 병원 이동 시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담당 교직원을 선정하여 병원 동행
- 병원 이동 시 필요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전화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주요 정보 전달
- 병원 이동 중 2차 사고가 우려될 경우 119 구조대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교직원이 이송할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함

구 분	주 의 사 항
1	• 부상자의 몸을 움직일 때와 옮길 때는 가급적 환자의 움직임이 적게 한다.
2	• 이송 완료까지 부상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3	• 2인 이상이 이송을 할 경우, 반드시 리더를 정하여 이송한다.

❑ 생명 위급상황

○ 2차 피해 우려 확인
- 현장이 위험할 시 피해 학생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 척추손상 등 중증 부상자의 경우 무리한 이동 삼가

○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
- 119 구조대 도착 전 생명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장 먼저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이 응급처치 실시
- 응급처치 실시 전 의식, 호흡, 맥박 등 확인
- 의식이 없을 시 기본소생술 먼저 시행, 의식이 있을 시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심폐소생술, 호흡기질환, 출혈 등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 응급처치가 어려울 경우 피해 부위 촬영 사진을 119 구조대에게 공유하여 지시에 따름

○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교육시설의장, 학부모에게 간략하고 정확하게 주요 정보 전달
-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실정에 따라 병원 이동 시 동행할 담당 교직원 선정

※ 정보 전달방법 :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쳐서, 응급처치 결과 또는 진행 상항 등 전달

3. 상황정리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교내 응급처치

구 분	세 부 내 용
주의사항 안내	• 상황별 응급처치 시행 결과 및 주의사항 안내가 필요할 경우 피해 학생과 해당 담임교사에게 안내
응급처치 및 상황기록	• 사고 현황 등은 사고 발생 상황을 관찰했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교직원이 작성 • 사고현황 작성방법 :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피해 학생 상태, 처치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보건교사 또는 상황별 응급처치를 실시한 교직원은 필요 시 응급처치 결과 보건일지에 작성

○ 병원 치료
- 아래 생명 위급상황 조치사항 시행(병원 이송 상황 및 경과 전달, 보호자 부재 시 역할 대행)
- 학부모 병원 도착 후 치료경과 안내 후 피해 학생 인계
- 담당 의사가 피해 학생 스스로 귀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에게 주의사항 안내 후 귀가 조치(학부모 동의 시)

❑ 생명 위급상황

○ 병원 이송 및 치료경과 상황전달
- 병원 이송 상황 및 경과에 대해 교육시설의장 또는 교감, 학부모에게 상황 전달

○ 보호자 부재 시 역할 대행
- 학부모 인계전까지 피해 학생 보호자 역할 대행
(학부모 외 피해 학생 친척 등 역할 대행자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 인계 후 교직원 학교 복귀 가능)

4. 보고조치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교내 응급처치 : 보건일지 작성

○ 병원 치료

구 분	세 부 내 용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신청여부 판단	•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도공제회 신고 • 병원 치료결과에 따라 공제급여 신청여부 판단 후 신청

❑ 생명 위급상황

○ 보고기준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상황보고

구 분	세 부 내 용
교육청 (교육부)	• 사망 또는 장해(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부상과 3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육청 선 유선보고 후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집계 시스템으로 사고 통지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계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계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혈관손상, 다발성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출 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등
안과계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안통, 눈 출혈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피부에 나타난 이상반응
정신과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계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경련, 38℃이상의 소아고열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이외의 심한 치통, 치아손상 등 신속을 요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재구성

붙임 #2 상황별 처치방법

❑ 일반생활 응급처치

○ 코의 상처 (코피, 비출혈)

둔탁한 물건 등에 의해 코에 충격을 받거나 고혈압, 고도의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처치

1)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혈액을 삼키거나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코뼈 바로 아래 부분을 5~10분간 눌러준다.
3) 콧등을 얼음주머니 등으로 대어주거나 코 아래 윗입술 바로 위를 압박한다.
4) 출혈이 멈추었더라도 바로 코를 풀지 않도록 한다.

코피 주의사항

피(비출혈)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코뼈가 부러진 것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입의 상처

입의 상처는 피와 흔들리는 치아로 인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치료할 때는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1)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없으면 머리를 전방으로 숙이고 앉아 있게 한다.
2)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있으면 회복자세를 취해준다.
3) 입술 관통상 일 경우, 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근 드레싱을 대어주며, 입술과 혀에 차가운 것을 대어준다.

○ 치아 빠짐 (유실)

치아가 빠졌을 때, 신속한 지혈과 치아를 재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1) 치아의 유실 시간을 파악한다.
2) 유실된 치아를 입안에 넣어 병원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어린아이의 경우 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넣어서 보존하는 방법이다. 만약 우유가 없다면 깨끗한 물에 넣어 보존한다.
   -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보존하는 이유
     우유는 구하기 쉽고 멸균이 되어있고 세포가 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농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4) 가능한 1시간 이내에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5) 유실된 치아의 뿌리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치아유실 후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
치아가 빠진 후 15분 내에 다시 심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빠진 치아가 공기 내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치아를 재이식해도 대부분 뿌리가 흡수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즉, 치아의 유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 귓속의 이물

귓속에 파리 또는 벌레가 들어간 경우 불빛으로 유도해 밖으로 빼낸다. 이물을 바늘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빼낼 경우 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9~130]

❑ 드레싱

○ 드레싱의 용도

감염방지, 출혈방지, 분비물 흡수

○ 드레싱의 종류

1) **거즈** - 작은 상처에 사용되며 크기별로 나뉘어서 멸균 포장되어 있다. 일부 거즈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상처에 달라붙지 않으므로 특히 화상부위나 분비물이 있는 상처에 유용하다.
2) **접착 드레싱** - 혈액이나 액체가 응고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일회용 밴드처럼 생긴 것은 무균 드레싱과 붕대를 혼합한 형태로 작은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에 유용하다.
3) **외상용 드레싱** - 크기가 크고 두껍고 흡수성이 있는 소재로 소독이 되어 있으며 주로 출혈이 심한 베인 상처나 벗겨진 상처에 유용하다.

○ 드레싱 할 때 주의할 점

1) 솜뭉치나 뭉친 약솜을 드레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젖은 드레싱을 떼지 않는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드레싱을 덧댄다.
3) 상처에 달라붙은 드레싱을 억지로 떼어 내지 않는다. 만일 떼어 내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적신 후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 붕대 용도

○ 붕대의 용도

1) 드레싱이 상처에 붙어 있게 고정
2) 부목의 고정
3) 압박을 통한 지혈
4)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
5) 부기(浮氣) 예방

○ 붕대의 종류

1) 탄력 롤 붕대 : 염좌 등 압박 및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2) 사두붕대 : 양 끝을 잘라 귀가 네 개 있는 모양. 돌출된 부위에 유용하다.
3) 삼각건 : 반창고가 없어도 드레싱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삼각건 매듭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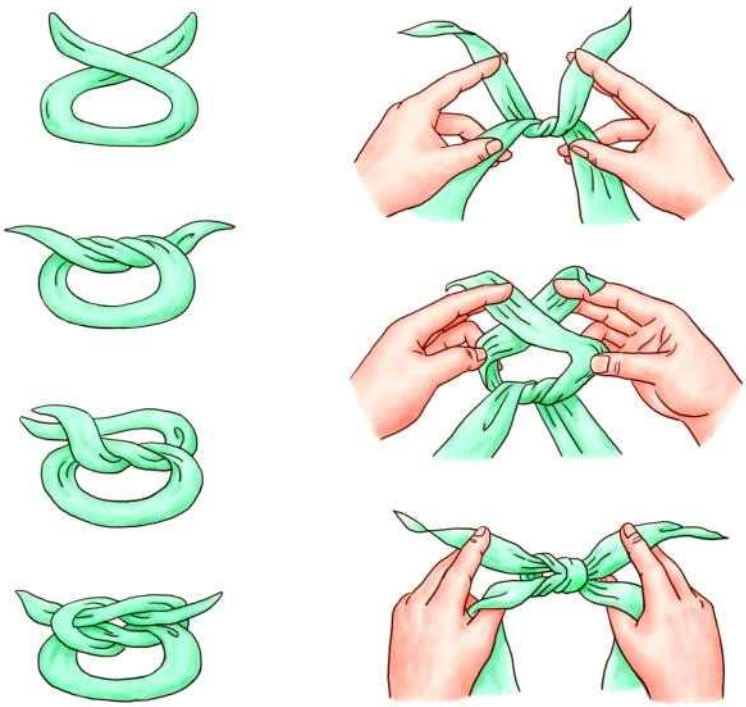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5~96]

○ 삼각건을 사용하여 상처 응급처치하기

머리

머리에 댄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히 머리에 넓게 상처를 입었을 때 사용한다.

1) 삼각건의 밑변 부위를 폭이 약 5cm 정도 되도록 접는다.
2) 접은 부분의 중심이 이마 중앙의 눈썹 위에 오게 한다.
3) 삼각건의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 감고 교차하여 다시 앞으로 오게 하여 이마 중앙에서 묶는다.

어깨

어깨나 상완(위팔)에 댄 넓은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두개의 삼각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중의 한 개는 좁게 접는다.

1) 펴 놓은 삼각건 꼭짓점 부근에 세 번 접은 다른 삼각건을 놓고 밑변이 평행하도록 하여 2~3번 접는다.
2) 넓은 삼각건으로 상처를 덮고 접은 삼각건의 양 끝을 부상당하지 않은 쪽의 겨드랑이 바로 앞에서 묶는다.
3) 부상당한 어깨 쪽 삼간건의 양끝을 겨드랑이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상완부에 돌려서 단단히 묶는다.

팔꿈치

팔꿈치의 상처에 댄 드레싱을 고정시키고 팔꿈치의 운동도 가능케 한다. 팔꿈치를 ㄱ자로 구부린 자세로 삼각건을 감는다.

1) 삼각건의 넓이를 7~10cm로 만든 후 드레싱 위를 중심으로 놓고 감기 시작한다.
2) 한번 돌려 감은 후, 한 쪽은 팔꿈치 위쪽으로 돌려 감아 주고 다른 한 쪽은 아래쪽으로 돌려 감아준다.
3) 삼각건의 양 쪽 끝이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나게 한 후 묶어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2]

❑ 탈구

○ 정의

뼈가 정상위치를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 증상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붓는다.

○ 응급처치

1) 비상시가 아니면 비의료인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2) 부상부위를 편하게 하고, 냉찜질을 하여 통증과 부기(浮氣)를 가라앉힌다.
3)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병행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염좌

○ 정의

인대 등 관절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한다.

○ 원인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정상운동 범위를 심하게 벗어날 경우 주로 발생한다.

○ 증상

1) 손상과 동시에 부어오르기 시작하며 통증을 유발한다. 부상부위를 움직일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
2) 부상부위의 피부색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지만, 변색될 경우 장기간 지속된다.

○ 응급처치

1) 부상부위가 손목일 경우 팔걸이를 하여 고정시키고, 발목일 경우 환자를 눕히고 부목, 삼각건 등을 활용하여 고정시킨 후 부상부위를 높여준다.
2)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상처 부위를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다.

3) 염좌가 심하다면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다.
4) 발목 염좌가 있는데 혼자 걸어야 한다면,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바닥 굽 바로 앞에 접은 붕대의 중간 을 대고(신발은 벗은 상태라면 발등위에 접은 붕대의 중간을 대고 발바닥을 한 번 감은 뒤) 양끝을 발뒤꿈치 위(뒤)에서 교차시킨 후 다시 발목 앞으로 돌려 교차시켜 양끝을 발뒤꿈치의 양쪽을 지나간 붕대 밑으로 넣어 걸어서 다시 발등에서 묶는다.
5) 발목 염좌는 되도록 걷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육염좌

○ 정의

근육이나 건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

○ 원인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거나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

○ 증상

관절사이의 통증, 부종, 기형이 발생한다.

○ 응급처치

염좌의 처치내용과 같이 부상부위를 안정시키고, 냉찜질을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골격의 손상 시 일반적인 응급처치

○ 뼈의 골절이 의심되는 때의 응급처치

1)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절된 환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2)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으로 골절을 악화시키게 해서는 안된다.
3) 굽은 곳을 바로 펴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돌출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
4) 골절이나 탈구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전부 부목을 댄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5)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다.

○ 탈구(관절이 빠졌을 때) 시 응급처치

베게나 쿠션을 사용 부상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염좌(근막 또는 인대 손상 등) 시 응급처치

1) 관절 주위의 인대나 조직의 손상으로 흔히 '삐었다' 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2) 부상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관절을 지탱해 주고 손상된 부분을 높게 해준다.
3) 찬 얼음으로 부은 것과 통증을 감소시켜 주면 효과적이다.
4) 골절과 같은 처치로 부목을 대준다.

○ 부목사용의 목적

1)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폐쇄골절이 개방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한다.
2) 신경, 근육과 혈관 손상을 최소화한다. 즉, 부러진 뼈끝이 주위 조직을 건드려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한다.
3) 동통을 경감한다.

발목 발등골절	염좌	하퇴골(정강이와종아리)골절

○ RICE(Rest-Icing-Compression-Elevation)

휴식(Rest)

1) 통증이 유발되는 움직임과 운동은 피하게 하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2) 머리, 목 손상 의심 시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다.

얼음찜질(Icing)

1) 손상부위에 거즈나 의복을 대어 피부손상을 예방한 후 얼음 등을 이용해 차갑게 해준다. 얼음찜질은 부기(浮氣)와 통증,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2) 얼음은 별도의 얼음주머니를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수건이나 옷에 싼 후 이용한다. 단, 개방성 골절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다.
3) 손상부위에 10분간 냉찜질을 한 후 손상부위를 확인했을 때 심하게 차갑다고 느낀다거나 빨갛게 된다면 냉찜질을 중단한다.

압박(고정)(Compression)

1)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얼음찜질을 하거나 높여 주기 전에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를 고정한다.
2) 압박(고정)의 목적
   - 통증 감소
   - 주변의 연한 신체조직 손상방지
   -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
   -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 개선
   -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악화될 가능성 예방

올리기(손상 부위 높임)(Elevation)

1)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량을 감소시켜 부기(浮氣)를 줄여준다.
2)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는 부목을 대고 높여 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손상부위에 부목을 사용 시 고려할 점

1) 가능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상부위를 지지하면서 부착한다.
2) 개방골절은 출혈, 감염방지를 위해 골절부위를 지지하고 붕대를 감아준다.
3) 단단한 부목사용 시 부드러운 천 등을 감싸주면 좋다.
4) 부목사용 시 부목과 신체 사이의 빈 공간에 고임(삼각건, 천 등을 활용)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5) 부목은 삼각건, 붕대, 옷 등을 이용해 잘 고정한다.
6) 손가락, 발가락 끝을 자주 확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며, 부목을 댄 아래쪽이 저린다거나, 손・발가락의 피부색이 변할 경우 부목을 잠시 풀어준다. (30분마다 한 번씩 혈액순환 확인)
7) 가능하면 부목을 댄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충격처치를 병행한다.

❑ 화상

○ 화상의 정의

과도한 열, 화학물질, 전기, 태양열, 방사능 등에 의해 피부조직에 손상이 유발되는 것 →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감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 신체로부터 나오는 체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다.

○ 화상의 원인(연령별)

1) 3세 이하의 소아 - 가정에서 끓는 물
2) 3~14세 -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염 또는 그을림
3) 15세 이상 - 작업상의 사고

○ 화상 응급처치

화상처치의 4가지 기본단계
1) 화상부위를 냉각시킨다.
2) 감염예방을 위해 화상부위에 드레싱을 해준다.
3) 쇼크 응급처치를 병행해 준다.
4) 의료적 도움의 필요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 학교에서의 화상 상황

1) 핫팩 : 저온 화상
2) 주전자(포트) : 컵이나 종이컵에 물을 붓다가 화상
3) 컵라면 :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화상을 입거나 컵라면 용기를 들고 이동 중 물을 쏟아 화상을 입음

○ 화상의 종류와 증상

1도 화상 **(표재성/홍반성 화상,** Superficial Burns)	• 피부의 외피층만 손상된 것으로 대부분 일광에 의해 발생한다 • 증상 :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 • 치료하면 대부분 특별한 흉터 없이 5~6일 안에 완치된다
2도 화상 **(부분층/수포성 화상,** Partial-Thickness Burns)	• 피부의 외피와 표피, 진피까지 손상된 화상이다 • 증상 : 물집, 심한 통증, 흉터나 피부변색(붉어짐), 탈모 등이 생긴다 • 치료해도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보통 3~4주 안에 완치된다

3도 화상 (전층/괴사성 화상, Full-Thickness Burns)	• 피부의 전층, 피하지방, 근육, 뼈, 혈관, 신경 등 하층 구조까지 손상된 화상 • 증상 : 상처부위가 갈색 또는 거무스름하고, 아래에 있는 조직은 새하얗게 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통증이 없을 수 있다 • 치료해도 대부분 흉터가 남으며, 광범위한 3도 화상은 사망할 수도 있다

○ 화상 발생 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1) 된장, 간장, 기름, 약 등을 바르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2) 물집을 터트리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3) 눈 화상 경우 문지르지 말 것(각막 손상으로 실명 우려)
4)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피부손상, 세균 감염)
5) 피부가 부어오르기 전 시계, 반지 등 귀금속 제거할 것

출처: 응급처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11~112]

❑ 열성질환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일사병)
정의	• 고온에서 과도한 활동 후 체내 수분과 염분 소실로 일어나는 질환	• 땀을 과다하게 흘려 체내 수분이 떨어짐과 동시에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질환	• 고온의 태양열 등에 의해 뇌의 체온중추기능이 마비되어 일어나는 질환
원인	• 고온의 환경에서 강도 높은 운동과 노동을 할 때	•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
증상	• 근육 경련 (다리와 복부에 많음) • 따뜻하고 습한 피부 •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음 • 많은 양의 땀 분비	•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 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 체온은 정상 • 빠르고 약한 맥박 • 심한 발한	• 체온상승 • 건조하고 따뜻한 피부 • 의식을 점차 잃음 • 초기에는 강하고 빠른 맥박, 점차 느리고 약해짐 • 초기의 깊은 호흡에서 점차 얕은 호흡
응급처치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진하지 않은 소금물, 스포츠 음료를 줌 •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마사지 함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옷을 느슨히 함 •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냄 •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섭취 • 눕힌 상태에서 다리를 높여줌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옷을 느슨히 함 •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냄 •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음 • 환자의 머리, 어깨를 약간 높임

○ 열경련(Heat Cramps)

정의
고온상태에서 과도한 신체활동 후 체내 수분, 염분의 손실에 의해 근경련이 유발되는 상태
원인
심한 발한으로 인해 급격하게 신체 내 수분과 염분을 잃을 경우 발생된다.
증상
다리와 복부에 통증을 동반한 근수축, 체온은 정상, 축축한 피부
응급처치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주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마사지한다.

○ 열탈진(Heat Exhaustion), 열성피로(Heat Fatigue)

정의
고온상태에서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도한 손실로 혈류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임상 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극심한 고온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심한 노동으로 수분 손실이 진행되어 혈류량이 감소하지만 피부나 말초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며 생존에 필요한 장기로 가는 혈류는 감소한다.
증상
낮거나 정상적인 체온,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두통, 탈진, 메스꺼움, 현기증과 허약/무력감, 빠르고 약한 맥박 등
응급처치
1)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2)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3) 젖은 수건으로 열을 증발시킨다
4) 의식이 있으면 적은 양의 시원한 음료를 준다

○ 열사병(Heat Stroke)

정의
고온에 의해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요장기 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고온에 의한 체온조절 중추기능의 마비
증상
높은 체온, 붉고 건조한 피부, 의식 소실, 약하고 빠른 맥박, 얕고 빠른 호흡 등
응급처치
119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외의 처치법은 열탈진의 처치와 동일하다.

❑ 동상 및 저체온증

○ 동상의 정의

신체의 일부가 언 상태를 말한다.

○ 동상의 원인

추위에 신체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기온, 노출시간, 바람 등이 주요 유발 요인이다.

○ 동상의 종류

1) 표재성 동상 : 피부는 손상 되었으나 피부 아래 깊은 조직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1) 심부 동상 : 피부와 피부 아래 깊은 조직까지 침범한 동상이며 심하면 신체부위를 잃을 수 있다.

○ 동상의 증상

동상 부위의 감각 소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피부, 변색된 피부색

○ 동상 응급처치법

1)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지르지 않는다.
2) 동상 부위를 37~40도 정도의 물에 피부색이 정상이 될 때까지 담근다. 온도계가 없는 경우 손을 넣어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물이면 된다.
3) 동상 부위는 건조한 무균 붕대로 감고, 손・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멸균된 솜이나 거즈를 넣고 감는다.
4)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벌에 쏘였을 때

○ 정의

벌의 몸통 부분에 있는 침에 의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보고되는 중독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원인

벌통을 건드린 경우, 요란한 색의 옷을 착용한 경우 등이 있다.

○ 증상

보통은 쏘인 자리가 아프고 붓는 정도지만 벌독에 의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부 두드러기,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발작, 호흡곤란, 복통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벌독 알르레기를 유발하는 벌

꿀벌, 말벌, 땅벌 등

○ 벌에 쏘인 경우 응급처치

핀셋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하며, 벌침 제거 후 냉찜질을 한다.
(벌침을 제거할 때에는 독낭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발생 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충분히 확보한 자세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1)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의 옷을 피한다.
2)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한다.
3) 옥외에선 언제나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고, 몸에 맞는 옷을 입지만 원색의 옷은 피한다.

- 독충에 물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독충에 의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전신적인 과민반응 -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경련, 의식저하 등의 쇼크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하다.
- 과민성 쇼크의 경우 - 급속히 진행되며 1～2시간 이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60～80%는 기도가 부어 질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응급처치 - 쇼크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예방 - 평소에 알레르기나 특정물질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주변에 알린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7~128]

붙임 #3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심폐소생술

1. 현장 안전과 반응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2. 응급의료체계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장정지 코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3. 호흡 확인

호흡은 119 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4. 가슴압박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심장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 시작 1.5~3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얕아지므로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 가슴 압박법]

[소아 가슴 압박법]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5. 기도유지 및 인공호흡

1) 기도유지 방법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구조자는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장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호흡을 준비한다.

2) 인공호흡 방법

인공호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②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③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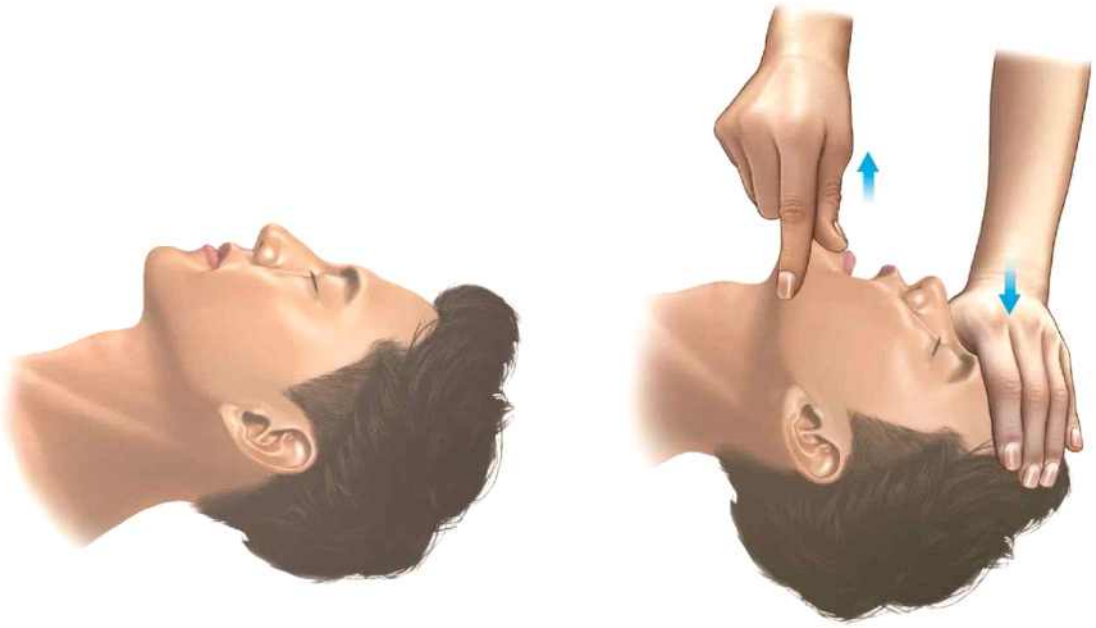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자동제세동기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기도폐쇄(하임리히법)

순서	처치 방법
1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묻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기도 폐쇄이므로 즉각 처치 시행
2	환자가 기침을 크게 한다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스스로 기침을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 환자**라면 **즉시 등 두드리기 시행**
3	등 두드리기 5회 연속 시행 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 법) 시행
4	기도폐쇄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 5회씩 반복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골절

○ 골절의 형태별 분류

1) 분쇄골절 - 골격이 손상되어 두 개 이상의 골절 파편으로 나누어진 경우
(자동차 사고 등에 많음)
2) 나선골절 - 골절이 뼈 둘레를 돌면서 골절된 형태(스키사고 등에 많음)
3) 사선골절 - 뼈의 축에서 사선으로 골절된 형태
(뼈에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 경우)

○ 골절의 원인별 분류

1) 외상성 골절 - 일반적인 골절, 정상적인 뼈가 외력으로 인해 발생
2) 특발성 골절 -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특정부위의 뼈가 약해져 외력 없이도 근수축에 의해 이상골절이 발생된 상태. 병적 골절이라고도 함
3) 피로성 골절 - 일정 외력이 장기간 반복되어 뼈에 누적되면 피로현상으로 변질되는 현상

○ 신체 부위별 골절처치

1) 빗장뼈(쇄골) 골절

증상

- 일반적인 골절 증상이 나타난다.
- 대부분 부러진 부분이 만져진다.
- 팔을 어깨위로 들지 못한다.
- 부상당한 어깨가 반대편보다 쳐진다.

응급처치

- 부상당한 쪽의 손을 팔꿈치 보다 높게 하여 반대쪽 어깨에 되고 삼각건을 댄다.

2) 위팔뼈(상완골) 골절

증상

- 골절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 어깨관절의 운동을 할 수 없다.

응급처치

- 팔꿈치를 'ㄴ자'로 구부린 후 어깨부터 팔꿈치 길이의 부목을 댄다.
- 삼각건을 부러진 뼈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묶는다.
- 삼각건으로 팔걸이를 만든다.
- 삼각건으로 팔 전체를 고정한다.
- 부목이 없을 시 붕대로 팔 전체를 가슴에 대고 감는다.

3) 팔꿈치뼈(주관절) 골절

증상

- 관절부위가 붓고 팔을 구부릴 수 없다.

응급처치

- 겨드랑이부터 손가락까지 부목을 댄다.
-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으면 팔을 무리하지 않게 끌어올리고 팔을 몸체에 대고 삼각건을 고정시킨다. 팔과 몸을 고정할 때는 골절부위를 건드리거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구부러진 팔을 무리하게 펴지 않는다.
- 이송 시 삼각건으로 허리를 묶어 고정한다.

4) 아래팔뼈(전완골) 골절

증상

- 아래팔 뼈 두 개가 모두 부러질 경우 골절의 일반적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팔 뼈 전완의 뼈 한 개 또는 두 개가 부러질 수 있다)
- 한 개만 부러졌거나 손목 뼈마디가 부러졌을 때는 부상 부위를 움직이기 어렵다.

응급처치

-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다.
-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의 부목을 손바닥 쪽에 댄다.
- 두 개의 삼각건을 골절부위 위쪽부터 맨다.
- 손바닥이 가슴 쪽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 보다 약 10cm정도 높게 한 후 삼각건으로 고정시킨다.

쇄골(빗장뼈) 골절	주관절(팔꿈치골절)	전박골(아래팔뼈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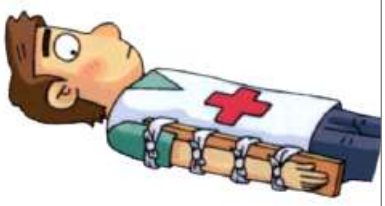	

출처: 응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6~108]

❑ 전기화상

○ 특징

1) 화상의 크기가 작아도 신체 내부의 심한 손상이 동반되며, 특히 심장은 전기에너지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2) 전기가 신체에 접촉하면 전기가 신체내부로 유입되고 다른 부위로 나오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나온 곳에 화상을 입고 전기가 나오는 곳의 상처가 깊고 크다.

○ 전기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 방법

1)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의 모든 전원을 차단 후, 접근해야 한다.
2) 필요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쇼크, 화상, 골절 처치 등을 실시한다.
3) 처치 - 119를 통해 화상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전문치료를 받도록 한다.

❑ 저체온증

○ 저체온증의 정의

내·외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 저체온증의 원인

찬물 속에 오래 있거나 젖은 의복을 장시간 입고 있을 때,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 장시간 체류 등 장시간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 저체온증의 증상

1)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다.
2) 체온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박동하며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3) 온몸을 떤다.(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떨림은 없어진다.)
4) 몸이 저리다.
5)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6) 무감각해지고 의식상태가 희미해진다.

○ 저체온증의 응급처치법

1) 신속히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치명적인 상태(호흡정지, 심장마비) 유무를 확인한다.
2) 필요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3) 젖은 의복은 벗기고 환자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따뜻한 장소로 옮겨 몸을 따뜻하게 한다. 단, 갑자기 체온을 높이지 않는다.
5) 저체온증 환자가 의식이 잃을 경우 필요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 저체온증의 단계

1단계

오한은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인체의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체온이 점차 떨어져 32℃ 정도가 되면 오한은 멈춘다. 오한이 없으면 심각한 저체온 상태이다.

2단계

불안하고, 초조하며, 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나 목적을 잃게 되며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판단력도 흐려지며 시력도 떨어지게 된다.

3단계

기억력이 떨어지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의식이 희미해지며 손과 발의 끝부분이 얼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단계이다.

4단계

맥박과 호흡이 느리고 약해지며 정신착란이나 혼수상태 호흡 중단과 같이 몸의 기능이 아주 빠르게 떨어지면서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

○ 저체온증의 온도별 변화

저체온증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갑작스럽게 체온을 변화시켜 환자의 떨림 증상을 억지로 중지시키려 하지 않는다
- 32℃ 이하의 저체온 환자에게 뜨거운 물병이나 핫팩 등으로 급속 가온치료를 하지 않는다. 급속가온은 말초의 차가운 혈액을 순환시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0~12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일반사항	학교명						
	사건번호				보고일자		
	사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년반	사고자구분
	지도교사		작성자	성명		연락처	

사고관련자	성명	
	학년반	
	사고관련자 구분	

사고내용	사고일자		사고부위	
	사고시간		사고당시활동	
	사고장소		사고의도성	
	사고형태			
	사고매개물			

사고개요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신명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